

第24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會事務處

2003年8月29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자산운용법안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附議된案件

- | | |
|---------------------------------------|----|
| 1. 자산운용법안(정부 제출) | 1 |
|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2 |
|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10 |
| o 5분자유발언 | 11 |

(14시49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간접투자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통일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접투자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신탁은 이 법안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운용하되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는 수탁회사에, 수익증권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통상 뮤추얼 펀드라 불리는 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을 자산운용회사가 담당하되 투자회사 재산의 보관 및 관리는 자산보관 회사에,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는 판매회사에 각각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간접투자의 투자 대상을 유가증권 외에 파생 금융상품과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까지 확대하고,

다섯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신탁에 수익자총회 제도와 투자회사에 법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간접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으며,

여섯째, 현행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겸업 제한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

1. 자산운용법안(정부 제출)

(14시5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자산운용법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政夫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마산 합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 위원회 金政夫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자산운용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통합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의 운용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간접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

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명칭을 국민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은행의 투자신탁 계약의 협약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체제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은행 내에 사외이사가 2인 이상 포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간접투자재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내 계약 업무 종사 직원 간 정보교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투자회사의 일반사무 외부 위탁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계열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도 일반사무의 외부수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을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자산운용회사가 원본을 보전하거나 사전에 설정한 최소이익 부족분을 부담해 주는 원금보전형 투자신탁의 설정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판매 권유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산운용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자산운용정보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자산운용법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자산운용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자산운용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 장 제출)

(15시0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 宋勳錫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법률안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242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과 朴仁相 의원이 각각 소개한 관련 청원 등 4건을 병합 심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2건의 관련 청원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제242회 국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여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휴가 일수는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 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 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시행 시기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 부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하였고,

넷째, 부칙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준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선택적보상휴가제의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 연차 휴가 일수는 15일에서 25일로 하되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당 1.5일로 하자는 의견, 시행 시기는 2004년 1월 1일에 금융·보험·공공 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2008년 1월 1일에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의견, 임금 보전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에 대하여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되 이를 월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선 노력 의무 규정을 반대하는 등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갈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를 방지할 수 없어 부득이 이와 같이 심사·의결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沈在哲 議員 주5일제가 실시되어서 법정근로 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게 되면 4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4시간의 기준이 줄게 되면 첫째는 인건비가 뛰게 됩니다. 4시간만큼 오vertime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겠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뛰게 될 수밖에 없고 최소한 13~14%는 뛰게 됩니다. 지금도 시간당 평균임금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7배, 8배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금 자체가 뛰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업종에서는 더욱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3조 3교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3교대가 되어서 3분의 1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도 중소업체에서의 인력 부족률을 따지면 약 13~14% 정도가 사람을 못 구해서 쪄쩔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5일제로써 임금을 더 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인 충격이 미칠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다 빠져 나가고 공동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소 제조업자를 조사해 보면 30% 정도는 노동력하고 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해외로 도망 가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지역의 반월공단,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30%가 지난 10년 동안에 빠져 나갔습니다. 탈출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험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당 GDP가 2만 달러일 때 이 주5일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근로시간이 37시간, 38시간, 이렇게 40시간보다 못 미칠 때 그때서야 법적으로 40시간을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의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노조의 조직률은 우리나라에서 12%입니다. 1300만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88% 1150만…… 1000만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건이 좋은 대기업은 주5일제를 해도 그래도 벼텨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주5일제를 실시해서 이만큼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론화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고야, 가만 놔두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대차 노조에서 이렇게 협상이 타결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나라가 거덜나겠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라도 하자. 울며 겨자라도 먹자.’라고 하지만 왜 울며 겨자를 먹습니까? 겨자를 안 먹으면 되지요.

자,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법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실하고, 법을 통과 안 시켜 가지고 각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현대차같이 어떤 데는 조건이 좋게 나타나고 그래서 조건이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하고 그 두 개의 손실을 예측해 보십시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대한민국 전체 중소기업이 타격받는 그 손실이, 개별적으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조건이 좋은 데가 불쑥불쑥 튀어 나오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충격이 미치는 영향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지금은 이득을 따지는 것보다는 손실이 어느 것이 더 클 것이냐, 그래서 손실이 더 작은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단체협약을 끝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금 수준 등 단위사업장의 노동조건은 바로 그 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을 요구해야지 우리 사업주가 줄 것이다’하고 예상을 하고 제기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스트라이크 파업 많이 해 보았습니다. ‘내 사업장이 망해서 내가 직장이 없어진다’라고까지 물고 가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장

의 현실은 그 단위사업장의 노동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나서서 일률적으로 딱 잘라서 ‘이만큼 실시해라’라고 합니까? 집단선택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하게 과악하시는 말아 주십시오. 주5일제는 다른 정책하고 다릅니다. 한번 시행되면 이것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십시오. 만일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시되었을 경우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전자투표율에서 역사가 우리들의 판단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판단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1만 불에서 아직도 8년째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뱃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혼명한 판단, 국가를 위한 혼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朴相熙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朴相熙 의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주5일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단언컨대 상정된 개정법률안에 따른 주5일근무제의 순차적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 전반에 크나큰 부담이 되는바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옛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지금이 꼭 이 지경입니다. IMF 사태로 죽을 고비를 겪우 넘겼던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북핵문제와 소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 신용불량자 급증, 노조 파업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또다시 죽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역대 정권

에서 항상 되풀이하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그 혼한 말조차도 듣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외국인고용허가제도 도입에 이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경제의 중흥이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5일근무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로 중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주5일근무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데 무리가 없는지를 여러 의원님께서는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막연히 주5일근무제는 고용을 증가시킨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등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등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근무제가 중소기업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지만 이른바 대세이기 때문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현재 양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조차도 임금 상승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뻔한데 이보다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과 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가를 즐기고자 한다면 임금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여가, 둘 다 보장해 달라는 양 노총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둘째, 주5일근무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기업들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이 24위에 그쳤으며, 시간당 GDP도 1위인 노르웨이의 45.5달러에 비해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노사협상이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 데 30시간이 걸리지만, 일본 닛산은 16.8시간, 제너럴모터스(GM)는 24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0여 년간의 계속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후진국 수준이며,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대표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나친 인건비 상승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선두주자인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이 포드의 6분의 1, 도요타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러한 체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의 임금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20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경쟁력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주5일근무제와 생산성 향상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하며, 임금 상승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주5일근무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입장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제반 비용이 평균 19.8% 상승되며, 이에 따른 제품 단가도 평균 15.8% 이상 인상해야 할 뿐 아니라 현행 실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1인당 월평균 22만 2307원의 임금을 중소기업이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 제조업체는 주당 56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주5일제가 도입되어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여 약 20%의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임금 보전의 경우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 규모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단가 상승과 초과근로 발생에 의한 인건비 부담

을 피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인천 지역 공단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체 사장을 만났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더구나 기름 때 묻히면서 일하려는 사람도 없어 일손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주5일근무제까지 도입된다고 하니 정말 죽을 맛이다, 주5일제가 시작되면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 해도 여의치 않다’는 하소연입니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조립기계·식품 부문 업체들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상품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대기업들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분들을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전가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 간의 임금격차는 물론 복지 부문의 격차가 더 벌어져 노동자 간에도 위화감을 조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은 주5일근무제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되며, 수천만 명의 노동자를 희생시켜 수천 명의 노동자들만을 배부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가 깊은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미취업 근로자의 고용 창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업종 규모별로 10여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휴일·휴가·근로시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나 현대자동차 파업의 예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사법치주의가 하루빨리 확립되어야 하며, 정부는 친노조 성향에서 벗어나 보다 엄중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관철시키지 않아 강성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 블룸버그통신의 윌리엄 페색도, 한국경제는 전투적 노조의 제물이 되었다,盧 대통령은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가 앞으로 노조의 인질이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보여 주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원원을 위한 정부 대안을 하루빨리 밝혀야 하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노조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어느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 경영을 하겠습니까?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계 유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아울러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노조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중소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주5일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감축하는 자동화, 생산성 향상, 공정 단축 등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마침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대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장비, 정보화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정부대책안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6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부 대책안도 시행 시기에 앞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라옵건대 오늘 이 회의에서 주5일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게 될 주5일근무제는 경제 상황이 열악한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보다 충분한 보완장치를 두면서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복수노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수노조가 되고 노사정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노사정책이 잘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또 고용허가제와 주5일근무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노동부나 양대 노총이 노동시장 개방을 반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원 여러분들, 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현재도 양대 노총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민의 합의를 구하고 우선 우리 280만 중소기업을 살리는 입장에서 오늘 주5일근무제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仁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議員 朴仁相 의원입니다.

앞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극과 극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결론은 반대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仁相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주5일 법안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국민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 속에서 이 국가지대사가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관하여 조금은 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정의 좋고 나쁨을 떠나 기업주라면 반드시 엄수해야 할 최저 근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입법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통계청 조사 결과 56%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소외된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앞서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본 법안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소수의견으로 냈던 부분은 宋勳錫 위원장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소수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전 보전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행 시기와 비정규직 휴가 일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5년 뒤인 2008년 1월 1일쯤이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46%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이나 전면 적용을 하겠다는 발상은 영세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법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도외시한 채 반 쪽짜리 주5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주5일제 아빠와 주6일제 아빠로 나뉘어 7년 이상을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날 부작용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 하나뿐이겠습니까?

법률안은 또한 정규직에게는 1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매월 1일 최대 12일의 휴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입니다. 이 조항은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역설하고

있는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ILO는 1년에 3주 이상의 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하에서 이틀의 휴일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5일 이상의 휴가가 주어져야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이 15일 이상의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OECD 국가의 노동자들은 연간 평균 180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2400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연장근로가 없이는 생계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금구조 때문입니다.

주어진 연월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면서 이를 사실상 임금으로 생각하고 생계를 꾸려 가는 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할증률 인하,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 하락 및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곳곳에 깔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필연적입니다. 국회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생각하는 노동계의 소외감은 투쟁 일변도의 운동 방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근로기준법을 보완·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5일제가 아니라 주5일제 도입을 위한 주5일제 법안입니다. 목적이 실종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린 이와 같은 법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金樂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金樂冀 의원입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의 정부 원안 통과에 대한 부분적 반대 토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라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앞날을 고뇌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은 채 한숨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직으로 인한 가정 해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가난과 빚에 쪼들린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장이 곧 실업자 증명서’라는 말처럼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채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노사 간, 노정 간 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침몰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노정·노사 간 불안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올바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은 경제 주체의 한 축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과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는 또한 우리 사회의 균등발전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경제·사회의 전 부문에 걸쳐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8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함으로써 이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도록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존경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宋勳錫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주5일근무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내용은 전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히려 현행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더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근무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정말 올바르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임금 보전과 관련, 정부 법안은 최근 경기침체를 이유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기업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시켜 각종 수당을 삭감시킴으로써 한계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세계 노동 시간 단축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관한 일부 기업의 주장은 생산성 향상이나 실 근로 시간 단축 등 인건비 절감 효과를 무시한 과장된 허수에 불과하며, 빈부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마저 망각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물론이고 기존에 받고 있는 수당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임금 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둘째, 법 시행 시기와 관련, 정부 법안은 중소 기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7년에 걸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70% 가 넘는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노동계층 간 극심한 차별과 갈등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2, 3년 이내에 전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법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 단축해야 합니다.

셋째, 연차 휴가 일수와 관련, 정부 법안은 최소 15일에서부터 최장 2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정부안과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회를 비교해 볼 때, 즉 정부안은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18일에서부터 22일로 되어 있는 공익위원회는 최장 연차 휴가를 받게 되는 17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6.6%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93.4%에 이르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최초 휴가 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의 기본원칙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초 휴가 일수를 18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휴가 일수도 1.5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5일제 도입은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노사 간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사회를 정착시키고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경우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효과도 상실될 뿐 아니라 각 경제 주체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미래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혁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정부 원안 통과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141인, 반대 57인, 기권 32

인으로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을 상정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산업자원 위원장 제출)

(15시4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裴奇雲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裴奇雲 산업자원위원회 裴奇雲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申鉉泰 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을 위한특별법안과 본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 이상 2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심의·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의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인력·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및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청년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이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중소기업이 대학 내에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인력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섯째,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게 창업 지원, 국내외 연수와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하거나 우대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학자금 지원 등의 인력 지원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산업자원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8인 만장일치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5시50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능한 5분 발언을 들으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晟祚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 도량동 파크아파트에 살고 있는 金晟祚 의원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1억 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시가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의 동일한 평수의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무려 10배 가격인 12억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무섭게 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안정대책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한 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국에서 망해 가는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서울로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현상을 치유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 세무조사는 오히려 화를 키울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지방 균형발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두었고, 정부 각 부처도 이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망해 가는 지방산업을 오히려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산업자원부가 향후 수도권 억제정책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밝힘으로

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전략과제 추진 태스크 포스팀에서 마련한 공장설립·입지 관련 규제완화 방안 보고서에서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완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업체 수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89%가 몰려 있으며, 생산액은 9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그토록 외쳐 대면서도 법령까지 바꾸어 가며 지난 2월 이후 수도권에 대기업의 대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도체, 자동차 공장 등 대규모의 공장 증설을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왜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이상적인 수도권 집중을 방치해 놓고서는 도저히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수도 이전에 앞서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대기업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하나가 수많은 하청 중소기업을 거느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기업 하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정부 부처 하나가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기능적 영향은 크고 역기능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산업의 지방분산을 외치면서도 고육지책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진입규제 장벽을 낮추고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개발이란 말이 처음 생겼을 때도 우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관료들은 그 길을 택해 왔습니다. 5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틀을 깨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鄭義和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鄭義和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중·동구 출신 鄭義和 의원입니다.

며칠 전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金大中 전 대통령의 아들들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법원과 검찰을 모욕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업 씨가 아파트 베란다에 10억 원을 숨겨 두고 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천문학적인 부정한 돈을 만진 것이 별것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별것이겠습니까? 김홍걸 씨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도 별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별것이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 아들들의 부정축재, 직권남용, 국정농단, 외화 밀반출 혐의나 호화생활, 이 모두가 盧武鉉 대통령 식으로 보면 은폐되어야 하고 검찰은 손을 놓고 폐업했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별것 아니라는 말에 그저 어안이 병병하고 가슴을 치고 싶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검찰이 3남 김홍걸 씨의 비리를 축소·은폐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국민을 속였는지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드러난 金大中 대통령 아들들의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조만간 다시 더 큰 의혹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서야 盧 대통령은 검찰에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추가로 수사하라고 지시할 것입니까?

모름지기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남 광양에서 검찰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또 다시 앞으로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 권력이 있는 만큼 견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권 초기인 지난 3월 盧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 앞으로 검찰에 전화 한통 걸지 않겠다. 소신껏 일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찰권은 아시다시피 민주 법치사회에서 국가권력의 본질적 원천의 하나이자 수단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뇌물·위법 행위가 판을 치는 풍토가 바로잡힐 때까지 검찰권은 신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여당의 대표이건, 대통령이건, 검찰 자신이건 법은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가 있기까지 보수단체가 보여 준 행위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 내지는 묵인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경찰의 대응 태도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비상경계하에 있어야 할 경찰이 당일 보여 준 대응 태도는 한마디로 무대책, 무방비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경북 예천에서 벌어진 북한 응원단의 플래카드 철거사건도 그렇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기습사건, 원내 제1당 현판 탈취 및 습격 사건에서도 경찰은 치안력 부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자유민주社会의 근간은 법과 원칙에 의한 평화와 안전입니다. 청년 세대의 기량을 마음껏 거루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국정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고, 치안 책임자인 행자부장관은 우왕좌왕 무대책으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혼란에 대해 엄정하게 추궁하고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咸承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민단체든 여론이든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불법한 통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이 민주 정부 체제의 요체인 권력의 분립과 그런 분립된 권력 간의 상호견제·균형까지를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최근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으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발언의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대한민국 내 어떤 권리기관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타 기관과의 견제·균형의 상태에서 벗어난 무소불위의 권리기관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 그런 민주정치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결코 부당한 간섭이나 불법한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은 검찰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용기 있게 벗어 버리고 순간순간의 시류나 여론의 향배에 초연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도대로 수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청주지검에서 있었던 이른바 몰카사건의 수사에서 보듯이 사건의 본질인 나이트 클럽 업주와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검찰 고위간부나 또는 일부 정치세력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사건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곁가지인 수사검사의 수사 과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신속하게, 엄격하게 수사하면서도 막상 사건의 본질 수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한 것, 이런 것들은 바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 고 鄭夢憲 회장의 변사사건 수사 과정상의 부실·의혹·의첨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와 철저한 수사 촉구 행위를 두고 취지를 망각한 채 거두절미하여 “강압수사는 없었다. 내가 없다면 없는 것이다.”는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통제행위를 두고 고소 운운하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요구조차 피해 가려는 것이 작금의 검찰의 태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에도 검찰의 국가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점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도를 벗어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통제는 물론이고 수사 진행 중이라도 감찰조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조사를 통한 적절한 통제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부 간섭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엊그제 발언은 그 사용된 용어가 다소 적절치 못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 취지만은 절대 왜곡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자산운용업법안

투표의원(220人)

찬성의원(219人)

강 봉 균	강 삼 재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성	강 창 희	고 진 부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육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운 용	김 정 부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흥 신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목 요 상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육	박 종 근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창 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김영선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훈	김정부	김종하	김태홍	김택기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훈석	김학송	김학원	김황식	김효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김희선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문석호	박관용	박명환	박상천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박세환	박원홍	박재욱	박종근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박종우	박종옹	박주선	박주천
오영식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박진	박창달	박현기	박혁규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두환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윤여준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훈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송석찬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이부영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신기남	신영국	안경률	안동선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안상수	안영근	오경훈	오세훈
이용삼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유용태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이재선	이재오	이재정	이재창	윤여준	윤철상	이강두	이강래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한동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방호	이부영	이상수	이상희
이호웅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이성현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이재정	이한동	이해찬	이호웅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임채정	임태희	전용학	전재희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몽준	정문화	정세균	정의화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진석	조배숙	조부영	조순형
정형근	조배숙	조부영	조성준	조정무	조희욱	천용택	천정배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최명현	최병렬	최연희	최용규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추미애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최명현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허태열	현승일	홍문종	홍사덕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홍재형			
하순봉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人)

김영선

반대의원(57人)

장성구	고진부	권기술	권철현
김경천	김근태	김덕룡	김락기
김문수	김병호	김영환	김진재
김찬우	김태식	김홍신	목요상
박병석	박상희	박시균	박인상
박종희	백승홍	서상섭	손희정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택수	엄호성	윤두환	이승철
이완구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협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장광근
장재식	전용원	정장선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한천	주진우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투표의원(230人)****찬성의원(141人)**

강봉균	강삼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구종태	권영세	권오을	권태망
김경재	김광원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홍준표

기권의원(32人)

김기준	김동욱	김성순	김충조
김형오	나오연	맹형규	민봉기
박근혜	박병윤	박상규	송광호
오영식	이병석	이상배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해봉	이훈평
장성원	장영달	전갑길	정병국
조웅규	최돈웅	최병국	최선영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황우여

유홍수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이강우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완구	이우재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정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창복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호옹	이훈평	이희규	이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재식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대철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철기	정배숙	조부영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조천용
천정배	최돈옹	최명현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승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승일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대안)

투표의원(218人)

찬성의원(218人)

장봉균	장삼재	장성구	장숙자
장신성일	장운태	장인섭	장재섭
장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기	김정부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홍신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진	박창달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훈석	손희정
송광호	송석찬	송훈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영식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出席議員(247人)

康奉均	姜三載	姜成求	姜淑子
姜申星一	姜雲太	姜仁燮	姜在涉
姜昌成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具鍾泰	姜琪述	權寧世	五敬乙
權哲賢	權泰望	金梓培	金天載
金光元	金槿泰	金杞培	金杞
金淇春	金德圭	金德龍	金德培
金東旭	金樂冀	金滿堤	金明謙
金武星	金文洙	金秉浩	金富鬥
金相賢	金聖順	金祿祚	金祿煥
金映宣	金榮春	金榮鑑	金鑑斗
金容甲	金容鈞	金政學	金煥河
金雲龍	金容基	金政夫	金鍾兆
金宗鑄	金鎮載	金燦于	金忠松
金台植	金泰弘	金宅起	金鶴鳴
金學元	金炯眞	金洪信	金南植
金孝錫	金希宣	金羅堯	金堯相
南宮晳	都鍾伊	孟亨奎	孟奎用
文錫	閔鳳基	朴寬基	朴惠惠

朴 明 煥	朴 炳 錫	朴 炳 潤	朴 尚 奎
朴 相 千	朴 相 熙	朴 世 煥	朴 承 國
朴 是 均	朴 洋 淚	朴 源 弘	朴 仁 相
朴 在 旭	朴 鍾 根	朴 宗 雨	朴 鍾 雄
朴 鍾 熙	朴 柱 宣	朴 柱 千	朴 振 太
朴 昌 達	朴 憲 基	朴 赫 圭	朴 煦 太
裴 基 善	裴 奇 雲	白 承 弘	徐 秉 淚
徐 相 變	徐 廷 和	徐 清 源	偰 松 雄
薛 勳	孫 希 妍	宋 光 浩	宋 錫 賛
宋 永 吉	宋 榮 珍	宋 勳 錫	辛 卿 植
申 溪 輪	辛 基 南	申 榮 國	申 鉉 泰
沈 揆 喆	沈 載 權	沈 在 哲	安 炏 律
安 東 善	安 商 守	安 泳 根	安 澤 秀
梁 正 圭	嚴 虎 聲	吳 慶 勳	吳 世 勳
吳 泳 食	吳 長 變	元 裕 哲	元 喜 龍
劉 容 泰	柳 時 敏	柳 在 珪	柳 漢 烈
柳 興 淚	尹 斗 煥	尹 汝 雋	尹 鐵 相
李 康 斗	李 康 來	李 敬 在	李 揆 澤
李 根 鎮	李 洛 淵	李 萬 變	李 方 鑄
李 秉 錫	李 富 榮	李 相 培	李 相 淚
李 祥 義	李 性 憲	李 承 哲	李 良 熙
李 嫵 淑	李 完 九	李 龍 三	李 佑 宰
李 元 昌	李 源 烟	李 允 盛	李 允 淚
李 仁 基	李 仁 濟	李 在 善	李 在 五
李 在 穎	李 在 昌	李 正 一	李 鍾 杰
李 柱 榮	李 昌 馥	李 漢 久	李 漢 東
李 海 龜	李 海 凤	李 海 璞	李 協
李 浩 雄	李 訓 平	李 熙 圭	林 仁 培
任 鍾 哲	林 鎮 出	林 采 正	任 太 熙
張 光 根	張 誠 源	張 永 達	張 在 植
全 甲 吉	田 瓔 源	田 溶 鶴	全 在 姬
鄭 甲 潤	鄭 均 桓	鄭 大 哲	鄭 東 泳
鄭 東 采	鄭 夢 準	鄭 文 和	鄭 柄 國
丁 世 均	鄭 義 和	鄭 長 善	鄭 鎮 碩
鄭 哲 基	鄭 亨 根	趙 培 淑	趙 富 英
趙 誠 俊	趙 舜 衡	曹 雄 奎	曹 正 茂
趙 漢 天	曹 喜 旭	朱 鎮 吁	千 容 宅
千 正 培	崔 煉 雄	崔 明 憲	崔 炳 國
崔 秉 烈	崔 善 榮	崔 鉛 熙	崔 龍 圭
崔 在 昇	秋 美 愛	河 舜 凤	韓 昇 淚
韓 和 甲	咸 錫 宰	咸 承 熙	許 泰 烈
玄 敬 大	玄 勝 一	洪 文 鐘	洪 思 德
洪 在 馨	洪 準 均	黃 祐 呂	

○請暇議員(11人)

金 一 潤	金 貞 淑	金 弘 一	尹 榮 卓
-------	-------	-------	-------

尹 漢 道	李 美 卿	李 源 性	張 泰 玩
鄭 宇 澤	鄭 昌 和	崔 榮 熙	

○出席國務委員

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金 振杓
산업자원부장관	尹 鎮植
노동부장관	權 奇洪

【報告事項】

○特別委員長選任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영철)선출에관한인
사청문특별위원회

委員長 金杞培

(8월25일자)

대법관(김용담)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
원회

委員長 趙舜衡

(8월28일자)

○特別委員選任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영철)선출에관한인
사청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金杞培	李秉錫	權泰望	閔鳳基
朴鍾熙	李柱榮	李元昌	

새천년민주당

全甲吉	金聖順	金敬天	李熙圭
-----	-----	-----	-----

吳泳食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의원

鄭宇澤

(8월25일자)

보훈특별위원회

한나라당

朴是均	金允式	朴明煥	嚴虎聲
元裕哲	李秉錫	李仁基	

새천년민주당

沈載權	金槿泰	趙漢天	張泰玩
-----	-----	-----	-----

金成鎬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의원

鄭宇澤

(8월25일자)

장애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沈在哲	朴昌達	安商守	吳慶勳
李承哲	李源炯		

새천년민주당

崔榮熙 金相賢 金明燮 崔龍圭
李熙圭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柳時敏
(8월 25일자)

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金文洙 金政夫 金晃植 閔鳳基
李柱榮 李漢久 許泰烈
새천년민주당
姜雲太 宋永吉 具鍾泰 金孝錫
朴炳錫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鄭宇澤
(8월 25일자)

대법관(김용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나라당
崔鉛熙 安商守 崔炳國 沈揆喆
全在姬 金容鈞 安昊律
새천년민주당
趙舜衡 咸承熙 沈載權 李康來
鄭範九
어느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鄭鎮碩
(8월 26일자)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영철)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李秉錫	한나라당
	全甲吉	새천년민주당

(8월 25일자)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建設交通	林仁培	한나라당

(8월 26일자)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대법관(김용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崔鉛熙	한나라당
	咸承熙	새천년민주당

(8월 28일자)

○常任委員辭任 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張在植	統一外交通商	產業資源	새천년민주당
李洛淵	產業資源	統一外交通商	새천년민주당

(8월 20일자)

○特別委員辭任 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대법관(김용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崔炳國	吳慶勳	한나라당

(8월 27일자)

○議案提出

탈북난민구호활동관련 재중국구금자석 방축구결의안

(8월 13일 홍사덕 의원 외 148인 발의)

8월 14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醫療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8월 13일 임인배 · 강신성일 · 권기술 · 권오을 ·
김광원 · 김덕규 · 김병호 · 김성조 · 김영일 ·
김원길 · 김정부 · 김찬우 · 김학송 · 김황식 ·
나오연 · 민봉기 · 박명환 · 박승국 · 박재욱 ·
박종근 · 박혁규 · 손희정 · 송광호 · 신영국 ·
신현태 · 심재권 · 안상수 · 염호성 · 오경훈 ·
윤경식 · 윤두환 · 이경재 · 이규택 · 이근진 ·
이방호 · 이병석 · 이상득 · 이승철 · 이완구 ·
이원형 · 이윤성 · 이인기 · 이재창 · 이해봉 ·
이해구 · 임태희 · 장광근 · 장성원 · 전용원 ·
정병국 · 조정무 · 주진우 · 천용택 · 최돈웅 ·
최병국 · 최용규 · 하순봉 · 허태열 의원 발의)

8월 14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公職選舉 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8월 13일 심규철 · 염호성 · 이주영 · 임인배 ·
권영세 · 오경훈 · 전용학 · 권기술 · 이인제 ·
백승홍 · 박시군 · 박종근 · 정갑윤 · 오세훈 ·
이인기 의원 발의)

8월 14일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 회부

民法中改正法律案(임진출 의원 발의)

(8월 13일 임진출 의원 외 20인 발의)

8월 14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地方教育自治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

(8월 14일 윤경식 · 이방호 · 박창달 · 심재철 ·
오경훈 · 허태열 · 이규택 · 이해봉 · 김성순 ·

이재오 · 전용학 · 이인기 · 손희정 · 김정숙 의원 발의)

8월16일 教育委員會에 회부

대한민국국호영문표기변경(Corea)촉구결의안

(8월14일 김성호 · 김영환 · 김근태 · 김부겸 · 김원웅 · 김일윤 · 김태홍 · 김홍신 · 김희선 · 권기술 · 권오을 · 박명환 · 박양수 · 배기운 · 송영길 · 신기남 · 오영식 · 유재건 · 윤철상 · 이호웅 · 정범구 · 추미애 · 허운나 의원 발의)

8월16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8월14일 김희선 · 강봉균 · 강숙자 · 강운태 · 강인섭 · 고진부 · 구종태 · 권기술 · 권영세 · 권오을 · 권태망 · 김광원 · 김경재 · 김경천 · 김근태 · 김기재 · 김덕규 · 김덕룡 · 김덕배 · 김락기 · 김명섭 · 김부겸 · 김상현 · 김성순 · 김성호 · 김영환 · 김영춘 · 김옥두 · 김운용 · 김윤식 · 김원기 · 김원웅 · 김정부 · 김찬우 · 김충조 · 김태홍 · 김택기 · 김학송 · 김홍신 · 김홍일 · 김효석 · 김황식 · 남경필 · 남궁석 · 도종이 · 문석호 · 박명환 · 박병석 · 박병윤 · 박상천 · 박상희 · 박승국 · 박양수 · 박인상 · 박종근 · 박종우 · 박종희 · 박주선 · 박주천 · 배기선 · 배기운 · 서상섭 · 설송웅 · 설훈 · 송광호 · 송석찬 · 송영길 · 송훈석 · 신계륜 · 신기남 · 심규철 · 심재권 · 안경률 · 안상수 · 안영근 · 오경훈 · 오세훈 · 오영식 · 오장섭 · 원유철 · 유시민 · 유용태 · 유재건 · 유재규 · 유한열 · 윤경식 · 윤여준 · 윤영탁 · 윤철상 · 윤한도 · 이강래 · 이근진 · 이낙연 · 이미경 · 이부영 · 이병석 · 이상수 · 이성현 · 이승철 · 이완구 · 이용삼 · 이우재 · 이원성 · 이원창 · 이윤수 · 이재정 · 이정일 · 이종걸 · 이창복 · 이해봉 · 이해찬 · 이협 · 이호웅 · 이훈평 · 이희규 · 임종석 · 임진출 · 임채정 · 장성원 · 장영달 · 장재식 · 장태완 · 전갑길 · 전용학 · 정갑윤 · 정균환 · 정대철 · 정동영 · 정동채 · 정범구 · 정병국 · 정세균 · 정의화 · 정장선 · 정철기 · 조배숙 · 조웅규 · 조성준 · 조정무 · 조재환 · 조한천 · 천용택 · 천정배 · 최명현 · 최선영 · 최영희 · 최용규 · 최재승 · 추미애 · 한화갑 · 함승희 · 허운나 · 현경대 · 홍재형 · 안동선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8월14일 김홍신 · 이원형 · 김희선 · 김부겸 · 권기술 · 유시민 · 김원웅 · 김태홍 · 김명섭 · 김성순 의원 발의)

8월16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8월16일 안상수 · 최선영 · 박희태 · 박명환 · 김정부 · 장성원 · 박창달 · 정문화 · 강재섭 · 김용학 · 권기술 · 안택수 · 이인기 · 오경훈 · 이재오 · 박진 · 이성현 의원 발의)

8월18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騷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8월16일 안상수 · 최선영 · 박희태 · 박명환 · 김정부 · 장성원 · 박창달 · 정문화 · 강재섭 · 김용학 · 이윤성 · 안택수 · 이인기 · 오경훈 · 이재오 · 박진 · 이성현 의원 발의)

8월18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한국청소년종합정보원법안(안경률 의원 발의)

(8월18일 안경률 의원 외 20인 발의)

8월19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8월18일 손희정 · 이승철 · 이미경 · 오경훈 · 권기술 · 임진출 · 이원형 · 박재욱 · 박진 · 정범구 · 박근혜 · 심재권 · 박주천 · 강숙자 · 이연숙 · 이낙연 · 하순봉 · 이해봉 · 김근태 · 이재오 · 강창희 · 조배숙 · 박명환 · 안상수 · 김용학 · 박시균 · 김경천 · 권영세 · 안택수 · 전용학 · 장성원 · 박창달 · 김정숙 · 김홍신 · 윤경식 · 전재희 · 강재섭 · 염호성 · 남경필 · 임인배 · 최영희 의원 발의)

8월19일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

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8월18일 손희정 · 이미경 · 권기술 · 임진출 · 이원형 · 박재욱 · 박진 · 정범구 · 박근혜 · 심재권 · 최영희 · 이낙연 · 박주천 · 강숙자 · 이연숙 · 주진우 · 하순봉 · 오세훈 · 김근태 · 이재오 · 이승철 · 허운나 · 강창희 · 조배숙 · 박명환 · 안상수 · 김용학 · 박시균 · 권영세 · 안택수 · 전용학 · 장성원 · 박창달 · 김정숙 · 김홍신 · 윤경식 · 강재섭 · 염호성 · 남경필 · 임인배 · 김성순 의원 외 1인 발의)

8월19일 女性委員會에 회부

先物去來法中改正法律案(이훈평 의원 대표발의)

(8월18일 이훈평 · 최선영 · 신기남 · 김상현 · 박주선 · 김근태 · 이낙연 · 이희규 · 전갑길 · 강운태 · 장태완 의원 외 1인 발의)

8월19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미아의발생예방및가족상봉지원에관한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8월18일 김희선 · 김태홍 · 강운태 · 김영춘 · 이호웅 · 박상희 · 송영길 · 정동영 · 남궁석 · 이미경 · 오영식 · 김원웅 · 임채정 · 송광호 · 원유철 · 임종석 · 박인상 의원 발의)

藥事法中改正法律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8월18일 이성현 · 김문수 · 이재오 · 김용학 · 강재섭 · 박진 · 김만제 · 권오을 · 박혁규 · 윤두환 · 권태망 · 권영세 · 김영선 · 홍준표 · 이인기 · 김영춘 · 유시민 · 임태희 · 이한구 · 김정부 · 김황식 · 오세훈 · 이재선 · 박창달 · 전용학 · 권철현 · 최연희 · 안경률 · 전재희 · 이승철 · 윤경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19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8월19일 김부겸 · 강창희 · 유시민 · 김홍신 · 김용학 · 김원웅 · 김문수 · 장태완 · 이부영 · 이재오 · 김성순 · 이미경 · 이호웅 · 박명환 · 장성원 · 권기술 · 심재철 · 이경재 · 정몽준 의원 발의)

8월20일 政務委員會에 회부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구종태 의원 대표발의)

(8월19일 구종태 · 김충조 · 최재승 · 정장선 · 오영식 · 이정일 · 고진부 · 송석찬 · 유재규 · 정철기 · 김태홍 · 김택기 · 천용택 · 조재환 · 조성준 · 배기운 · 나오연 · 임태희 · 강봉균 · 이낙연 · 김효석 · 남궁석 의원 발의)

8월20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월드컵상품관련중소기업인피해보상촉구결의안

(8월19일 김성호 · 권오을 · 김희선 · 오영식 · 김택기 · 김정숙 · 이정일 · 이재오 · 김원웅 · 김충조 · 송석찬 · 김윤식 · 강신성일 · 고흥길 · 이인기 · 이원형 · 박주천 · 김종하 · 남경필 · 김형오 · 이용삼 · 장재식 · 정문화 · 박상규 · 전갑길 · 이승철 · 심규철 · 고진부 · 김태홍 · 송영길 · 허운나 · 양정규 · 백승홍 · 강성구 · 이상배 · 박상희 · 박세환 · 원희룡 · 박시

균 · 김동욱 · 서청원 · 장광근 · 김영춘 · 이재선 · 김용갑 · 이원성 · 윤두환 · 안상수 · 윤영탁 · 오경훈 · 강창희 · 이윤성 · 신기남 · 김황식 · 심재권 · 김일윤 · 정병국 · 이경재 · 배기운 · 이미경 · 유한열 · 김문수 · 권기술 · 홍문종 · 유재건 · 조성준 · 정범구 · 이원창 · 조웅규 · 강운태 · 홍준표 · 김명섭 · 박종희 · 조배숙 · 신현태 · 염호성 · 설훈 · 임인배 · 김성순 · 임태희 · 김용학 · 김광원 · 이상희 · 이성현 · 임종석 · 현승일 · 정갑윤 · 강삼재 · 박혁규 · 김무성 · 김찬우 · 이희규 · 유시민 · 김홍신 · 박재욱 · 정장선 · 이규택 · 박근혜 · 최병국 · 천용택 · 윤철상 · 안영근 · 임채정 · 주진우 · 김원기 · 이강래 · 조한천 · 이종걸 · 설송웅 · 박병윤 · 박명환 · 정형근 · 신경식 · 장인섭 · 김학송 · 하순봉 · 구종태 · 오장섭 · 유홍수 · 이호웅 · 이부영 · 김락기 · 서정화 · 박종웅 · 임진출 · 이낙연 · 권철현 · 김경천 · 김성조 · 이협 · 이재창 · 이재정 · 배기선 · 김정부 · 박승국 · 김운용 · 맹형규 의원 발의)

8월20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8월19일 정부 제출)

8월20일 產業資源委員會에 회부

醫療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8월20일 김명섭 · 조재환 · 민봉기 · 김태홍 · 조정무 · 이원형 · 김상현 · 남궁석 · 김성순 · 이호웅 · 이재오 · 이종걸 · 박상규 · 김찬우 · 조희욱 · 이용삼 · 김홍신 · 박상희 · 설송웅 · 유시민 의원 외 1인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개정법률안(김황식 의원 발의)

(8월20일 김황식 의원 외 18인 발의)

이상 2건 8월21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김영철)선출안

(8월20일 의장 제의)

8월22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集會 및 示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대표발의)

(8월21일 박승국 · 권철현 · 박혁규 · 백승홍 · 손희정 · 이방호 · 이상배 · 이원형 · 유한열 · 윤영탁 · 하순봉 의원 발의)

8월22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가족지원기본법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8월22일 김홍신 · 유시민 · 김부겸 · 유재건 ·

김희선 · 이재오 · 안영근 · 심재권 · 김태홍 ·
이미경 · 이재정 의원 발의)

8월23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국회의원(박재욱)체포동의안

(8월22일 정부 제출)

自動車管理法中改正法律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

(8월23일 임인배 · 고흥길 · 권영세 · 김만제 ·
김성조 · 김윤식 · 김학송 · 도종이 · 박창달 ·
백승홍 · 서병수 · 설송웅 · 신경식 · 안경률 ·
안상수 · 염호성 · 윤두환 · 이규택 · 이병석 ·
이상득 · 이윤수 · 임태희 · 장광근 · 정갑윤 ·
정병국 · 최연희 · 하순봉 · 홍사덕 의원 발의)

8월26일 建設交通委員會에 회부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8월23일 이낙연 · 이강래 · 유재건 · 이정일 ·
권태망 · 배기운 · 박양수 · 한화갑 · 설훈 ·
전갑길 · 이재정 · 안영근 · 강운태 · 천용택 ·
정동채 · 박주선 · 임채정 · 김경재 · 김택기 ·
손희정 · 이훈평 의원 발의)

8월26일 產業資源委員會에 회부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8월23일 권태망 · 오경훈 · 강창희 · 정문화 ·
현승일 · 남경필 · 유재규 · 박명환 · 권기술 ·
김학송 · 이경재 · 박혁규 · 김형오 · 윤한도 의원
발의)

8월26일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 회부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8월25일 이재오 · 강창희 · 윤경식 · 안상수 ·
서청원 · 윤두환 · 이윤성 · 박창달 · 김정숙 ·
이연숙 · 권철현 · 김문수 · 박승국 · 이방호 의원
발의)

8월26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광해방지법안(김택기 의원 대표발의)

(8월25일 김택기 · 배기운 · 김만제 · 이경재 ·
김원기 · 추미애 · 정문화 · 박상규 · 이종걸 ·
유재규 · 신기남 · 허운나 · 백승홍 · 한승수 ·
이재선 · 유시민 · 안영근 · 이창복 · 박인상 ·
김정부 · 고흥길 · 이연숙 · 조성준 · 이낙연 ·
심재권 · 오영식 · 신현태 · 김태홍 · 고진부 ·
유용태 · 정갑윤 · 이미경 · 조희욱 · 강인섭 ·
정장선 · 조재환 의원 발의)

8월26일 產業資源委員會에 회부

전자금융거래법안

(8월25일 정부 제출)

8월27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대법관(김용담)임명동의안

(8월25일 정부 제출)

8월2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刑法中改正法律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8월26일 이강래 · 이종걸 · 전갑길 · 설송웅 ·
정동영 · 정동채 · 정세균 · 송영길 · 이낙연 ·
장재식 · 신기남 · 유재규 · 김부겸 · 천정배 ·
김태홍 · 강봉균 의원 발의)

8월27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의회지도자(홍진)상건립의건

(8월26일 이희규 의원 외 78인 추천)

8월27일 國會運營委員會에 회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8월27일 環境勞動委員長 제출)

性暴力犯罪의處罰 및 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

(8월27일 이경재 · 강창희 · 권영세 · 권철현 ·
권태망 · 김부겸 · 김성조 · 김영선 · 김정부 ·
김정숙 · 김종하 · 김학송 · 김형오 · 맹형규 ·
박명환 · 박세환 · 박승국 · 박시균 · 박주천 ·
박창달 · 배기운 · 심규철 · 심재권 · 심재철 ·
안경률 · 양정규 · 염호성 · 오세훈 · 윤한도 ·
이낙연 · 이승철 · 이윤성 · 이재오 · 이주영 ·
이창복 · 장성원 · 정병국 · 주진우 · 하순봉 ·
허운나 · 허태열 · 서상섭 · 박진 · 김성호 · 장
광근 · 김광원 · 이성현 · 강인섭 · 김희선 · 이
규택 · 박인상 · 민봉기 의원 발의)

8월28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주민투표법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8월28일 박혁규 · 송석찬 · 윤두환 · 도종이 ·
이원형 · 권기술 · 강창희 · 정문화 · 윤경식 ·
정병국 · 이재오 · 박명환 · 장성원 · 이인기 ·
김형오 · 김무성 · 권철현 · 안경률 · 정장선 의원
발의)

지방분권특별법안(권태망 의원 대표발의)

(8월28일 박혁규 · 송석찬 · 윤두환 · 도종이 ·
이원형 · 권기술 · 강창희 · 정문화 · 윤경식 ·
이재오 · 박명환 · 장성원 · 염호성 · 김형오 ·
김무성 · 권철현 · 안경률 · 정장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29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가입동의안

(8월28일 정부 제출)

8월29일 統一外交通商委員會에 회부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서상섭 의원 대표발의)

(8월28일 서상섭 · 이호웅 · 김경천 · 김부겸 · 김성조 · 김원웅 · 김홍신 · 김희선 · 박명환 · 박승국 · 심재권 · 이성현 · 오영식 · 임종석 의원 발의)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서상섭 의원 대표발의)

(8월28일 서상섭 · 김경천 · 김부겸 · 김성조 · 김원웅 · 김홍신 · 김희선 · 박명환 · 박승국 · 심재권 · 오영식 · 이성현 · 이호웅 · 임종석 · 권기술 · 심재철 · 안상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29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대안)

(8월29일 産業資源委員長 제출)

○議案審查**자산운용업법안**

(2월20일 정부 제출)

(8월28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수정의결

證券投資信託業法中改正法律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

(2002년4월8일 이성현 · 김덕룡 · 김동우 · 박종근 · 심재철 · 박주천 · 이승철 · 김부겸 · 김성조 · 오세훈 · 김영춘 · 서정화 · 박종희 · 원희룡 · 안영근 · 홍준표 · 박원홍 · 엄호성 · 송영길 · 서상섭 · 이한구 의원 발의)

(8월28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

(2002년1월5일 송석찬 · 최영희 · 문석호 · 설훈 · 김옥두 · 김근태 · 이강래 · 조재환 · 원유철 · 이재정 · 김덕규 · 이희규 · 최용규 · 장성원 · 유재규 · 박용호 · 정범구 · 이훈평 · 문희상 · 이근진 · 김희선 · 김태홍 · 박주선 · 전용학 · 안동선 · 장성민 · 임종석 · 이창복 · 김화중 · 이호웅 의원 발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0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8월27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특별법안(신현태 의원 대표발의)

(7월31일 신현태 · 전재희 · 강성구 · 강인섭 · 강재섭 · 권기술 · 권태망 · 김기배 · 김무성 · 김성조 · 김태홍 · 김윤식 · 김용학 · 김진재 · 김학송 · 김형오 · 김황식 · 맹형규 · 박종희 ·

박상규 · 박혁규 · 배기운 · 백승홍 · 박현기 · 안경률 · 안상수 · 이강두 · 이근진 · 이해구 · 이재창 · 이한구 · 임인배 · 윤경식 · 윤두환 · 임태희 · 정의화 · 정문화 · 정갑윤 · 전용원 · 주진우 · 최돈웅 · 허태열 · 현경대 · 조희욱 · 이규택 · 박근혜 · 유용태 · 손희정 · 김경천 · 이원창 · 남경필 · 고흥길 · 이인기 의원 발의)

중소기업인력지원에관한특별법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8월11일 배기운 · 박상규 · 강인섭 · 김기재 · 김명섭 · 김성호 · 김경재 · 김홍일 · 김옥두 · 김근태 · 김원기 · 김성순 · 김택기 · 김태홍 · 김운용 · 강운태 · 남궁석 · 문석호 · 박병윤 · 박병석 · 박양수 · 설훈 · 송영길 · 송석찬 · 이재정 · 이낙연 · 이미경 · 이정일 · 이종걸 · 이강래 · 유재건 · 오영식 · 정동영 · 조재환 · 조성준 · 정세균 · 정철기 · 정범구 · 전갑길 · 조한천 · 정장선 · 천용택 · 최영희 · 허운나 · 한화감 · 김덕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29일 産業資源委員長 보고)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請願提出**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

(2003년8월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0 진수일 외 3인으로부터 李源炯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8월18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등을위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03년8월19일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 함양군의회 박순근 외 10인으로부터 李康斗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20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의약품판매제도개선등에관한청원

(2003년8월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90-4 (사)대한약업사협회중앙회 회장 허철로부터 朴是均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22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옥천조폐창부지매각철회에관한청원

(2003년8년25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8-11 옥천조폐창매각철회를위한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석 외 9694인으로부터 沈揆喆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26일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

간호사정원기준개선에관한청원

(2003년8월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275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장 김철수로부터 金洪信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28일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

경인여자대학임시이사파견철회에관한청원

(2003년8월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2-110 백창기 외 4인으로부터 李元昌 의원의 소개로 제출)

8월29일 教育委員會에 회부

○請願審查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2000년6월7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로부터 金文洙 의원의 소개로 제출)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7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남순으로부터 朴仁相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8월26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意見書提出

정치관계법(선거·정당·정치자금)개정의견

(8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8월28일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 송부

○依賴書提出

뉴스통신진흥회이사추천

(8월28일 정부 제출)

○書面質問書提出

자금세탁방지제도개선대책에관한질문서

(8월12일 千正培 의원 제출)

8월12일 정부에 이송

국방및안보문제에관한질문서

(8월13일 金秉浩 의원 제출)

8월13일 정부에 이송

건강보험법제48조제3항적용및제픽스고시적용에관한질문서

(8월14일 金洪信 의원 제출)

8월14일 정부에 이송

법학전문대학원제실시에관한질문서(4건)

(8월18일 鄭義和 의원 제출)

8월18일 정부에 이송

의료법제25조제3항단서조항의적용기준에관한질문서

(8월19일 沈揆喆 의원 제출)

자살에관한질문서

(8월19일 李源炯 의원 제출)

북한의NLL침범사항에관한질문서

(8월19일 權泰望 의원 제출)

이상 3건 8월19일 정부에 이송

경찰순찰지구대중심파출소증·개축에관한질문서(2건)

(8월20일 吳慶勳 의원 제출)

8월20일 정부에 이송

시화호문제해결에관한질문서

(8월21일 千正培 의원 제출)

8월21일 정부에 이송

군대내신체검사에관한질문서

(8월25일 金洪信 의원 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업무에관한질문서

(8월25일 沈揆喆 의원 제출)

이상 2건 8월25일 정부에 이송

분당선연장구간의중간역설치에관한질문서

(8월26일 金允式 의원 제출)

8월26일 정부에 이송

그린벨트내토석·골재·목재채취에관한질문서

(8월27일 安商守 의원 제출)

8월27일 정부에 이송

○書面質問書撤回

제픽스건강보험적용에관한질문서(국무총리실)

(8월1일 金洪信 의원 제출)

8월20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書面答辯書提出

제픽스건강보험적용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해양과학관건립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립보건원개편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3건 8월8일 정부 제출)

학생의자살문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13일 정부 제출)

불법적인긴급감청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보급문화재불법유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청소년자살문제등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질병관리본부신설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4건 8월14일 정부 제출)

의약품등의반송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18일 정부 제출)

국가산업단지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20일 정부 제출)

복권판매점의장애인우선계약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한국전쟁중국보급문화재불법유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8월21일 정부 제출)

국방및안보문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22일 정부 제출)

자금세탁방지제도개선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25일 정부 제출)

법학전문대학원제실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8월26일 대법원 제출)

법학전문대학원제실시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군항공기지소음및관련법령개정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8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17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
함)

○報告書

2002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

(8월22일 정부 제출)

8월22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회부

2003년도연차보고서

(8월25일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8월26일 法制司法委員會에 회부

2003년도연차보고서

(8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8월26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2002년도기금운용평가보고

(8월27일 정부 제출)

8월27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

2002년도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8월26일 정부 제출)

8월26일 國會運營委員會에 회부

2003년도연차보고서

(8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8월26일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

2003년도관광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8월28일 정부 제출)

8월28일 文化觀光委員會에 회부

○제243회국회(정기회)집회공고

일 시	2003년9월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
공 고 자	국회의장 朴 寬 用

(8월29일자)